

(참 조)

##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5. 10. 16.

내무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95. 10. 2.
- 나. 제출자 : 달서구청장
- 다. 회부일자 : 95. 10. 4.
- 라. 상정 및 의결
  - 제4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 제1차 내무위원회 상정 : 95. 10. 14.
    - 제1차 내무위원회 의결 : 95. 10. 14.

###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사유

지난 '95. 7. 1. 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14703호)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나. 주요내용

- 보상금 지급기준 적용시 기존 "일비"를 적용하던 것을 "회의수당"으로 자구(字句)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2조 제2항과 제4조 제1항 제1, 2호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자구(字句)변경하였으며

- 또한 보상금 지급시 사망, 장애, 상해가 중복될 경우 지급요령을 명확히 명시하기 위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중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치료비 전액”을 “치료비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로 문구를 개정하였으며
- 제4조 제2항의 내용은 의원이 장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또는 상해로 인하여 장애가 된 때에는 기 지급받은 장애 또는 상해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 3. 검토의견

본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의 회기중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시 원활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데 있음으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4. 질의 및 답변

질	의	답	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정활동 직무수행도중 상해와 장애로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와 사망했을 경우 보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상금 지급사유는 직무수행중 장애나 상해 사망했을 경우이며, 지급기준은 상해와 장애는 회의수당 1년분 범위내이며</li> <li>• 사망은 회의수당 2년의 범위내에서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해와 장애의 원인으로 사망시는 보상금 지급기준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년간 지급될 회의수당에서 상해와 장애시 기 지급된 것을 공제함</li> </ul>	

###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5-39
----------	-------

제출년월일 : 95. 9.

제 출 자 : 달서구청장  
(기획감사실)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보상금 지급기준의 일부 변경에 따른 조치로써
-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의 회기중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로 인한 보상금의 적정한 지급과 보상심의회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함.

##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제32조의 2)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의 2)

## 3. 주요골자

- 보상금 지급기준 적용시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자구 변경
- 보상금 지급시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하여 중복될 경우 지급요령 명시

##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 5.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일비”라 함은」을 「“회의수당”이라 함은」으로, 「“일비”를」을 「“회의수당”을」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고, 제3호중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치료비 전액”을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일비"라 함은 영15조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li> </ol>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회의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li> <li>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회의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li> <li>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치료비 전액</li> </ol> <p>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p>	<p>제2조(정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회의수당"이라 함은 ...회의수당을.....</li> </ol>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 ..... .....회의수당.....</li> <li>2. .... .....회의수당.....</li> <li>3.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li> </ol> <p>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